C - 113 - 2020

고,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약간의 점화원에 의해 과격한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.

- (아) "방동제"라 함은 내한제라고도 말하며, 콘크리트 공사 시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 콘크리트의 응결, 경화가 늦어지고, 콘크리트속의 물이 얼어 응결 및 경화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굳어진 부분도 파괴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에 섞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
- (자) "밀폐공간"이라 함은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
- (차) "질식"이라 함은 숨통이 막히거나 산소가 부족하여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,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소농도의 범위가 18% 이상 23.5% 미만, 탄산가스의 농도가 1.5% 미만,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,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일반적인 안전조치

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공사 전 피난계획을 수립하고, 적기에 피난 교육(경보 방법, 피난경로, 집결지, 층별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)과 훈련(붕괴, 화재, 질식, 침수 등)을 실시하며, 그 결과는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4.1 강풍에 따른 무너짐, 넘어짐 예방

- (1)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및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,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지물 등의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다음과 같은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은 중지하여야 한다.
 - (가) 순간풍속 10m/s 초과 시 : 설치, 수리, 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